

의안번호	제18호
의결연월일	2018. 3. 13.

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6일 백승권 의원 외 4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1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민병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이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